

급여 이용정보

I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은 38인으로 한다.
-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유선상담, 지면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②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1등급, 2등급 및 3등급 시설급여)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시설급여서비스 범위)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라.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④ 일반수급자의 월 이용료,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내역
비용총액		1,888,470	1,765,580	1,642,380	
요양보험 부담비용 (급여)	소 계	1,364,763	1,266,445	1,167,885	30.42일 기준
	요양급여비용(80%)	1,364,763	1,266,445	1,167,885	
개 인 부담비용 (비급여)	소 계	524,000	499,000	475,000	실 납부액
	요양급여비용(20%)	341,191	316,611	291,971	30.42일 기준
	식사재료비/간식비	182,520	182,520	182,520	
	상급침실 이용료	0	0	0	
	이.미용비	0	0	0	
	기타	0	0	0	

- ⑤ 경감대상 수급자의 월 이용료,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내역
비용총액		1,888,470	1,765,580	1,642,380	
요양보험 부담비용 (급여)	소 계	1,535,358	1,424,751	1,313,870	30.42일 기준
	요양급여비용(90%)	1,535,358	1,424,751	1,313,870	

급여 이용정보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내역
개 인 부담비용 (비급여)	소 계	353,000	341,000	329,000	실 납부액
	요양급여비용(10%)	170,500	158,480	146,480	30.42일 기준
	식사재료비/간식비	182,520	182,520	182,520	
	상급침실 이용료	0	0	0	
	이.미용비	0	0	0	
	기타	0	0	0	

⑥ 기초수급자의 월 이용료,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내역
비용총액		1,888,470	1,765,580	1,642,380	
요양보험 부담비용 (급여)	소 계	1,888,470	1,765,580	1,642,380	30.42일 기준
	요양급여비용(100%)	1,888,470	1,765,580	1,642,380	
개 인 부담비용 (비급여)	소 계	0	0	0	실 납부액
	요양급여비용(0%)	0	0	0	30.42일 기준
	식사재료비/간식비	0	0	0	
	상급침실 이용료	0	0	0	
	이.미용비	0	0	0	
	기타	0	0	0	

⑦ 비급여 대상항목과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반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식사재료비/간식비	182,520원	182,520원	0원
상급침실 이용료	0원	0원	0원
이.미용비	0원	0원	0원
기타	0원	0원	0원

⑧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노인장기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⑧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며,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및 욕구평가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서비스 외에 수급자가 임의로 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실비로 수령한다.

3.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 또는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단 협약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진료조절이 가능하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의사결정동의서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시설직원이 동행 할 수 있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 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① 입소어르신은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어르신에 의한 본원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②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노원장기관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II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인력배치기준 및 배치인력

구분	계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사무원	위생원	관리원	조리사	촉탁의사
배치기준	21	1	필요수	1	1	1	15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1
배치인원	22	1	0	1	1	1	14	0	0	1	0	2	1

2.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	구분	근무시간	인원	비고
시설장	주간근무1	08:30~18:00	1명	
사무국장	주간근무1	08:30~18:00	0명	
사회복지사	주간근무1	08:30~18:00	1명	
작업치료사	주간근무1	08:30~18:00	1명	
간호사	주간근무1	08:30~18:00	1명	
요양보호사	주간근무1	08:30~18:00	4명	
	주간근무2	08:00~19:00	4명	
	주간근무3	06:00~15:00	1명	
	주간근무4	13:00~22:00	1명	
	주간근무5	06:00~18:00	1명	
	야간근무1	19:00~08:00	3명	
사무원	주간근무1	08:30~18:00	0명	
영양사	주간근무1	08:30~18:00	0명	
조리원	주간근무5	06:30~18:30	2명	
위생원	주간근무1	08:00~19:00	1명	
관리원	주간근무1	08:30~18:00	0명	



노원장기 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평일종사자			휴일종사자		
연번	성명	직위	연번	성명	직위
1	유성호	시설장	1	강혜복	요 양 보 호 사
2	박주연	사회복지사	2	이철영	요 양 보 호 사
3	윤천숙	간호사	3	배미용	요 양 보 호 사
4	김 유	작업치료사	4	하정선	요 양 보 호 사
5	유수현	요 양 보 호 사	5	김종귀	요 양 보 호 사
6	이기영	요 양 보 호 사	6	김연묵	요 양 보 호 사
7	양영순	요 양 보 호 사	7	홍혜숙	조 리 원
8	김옥분	요 양 보 호 사	8	이주용	위 생 원
9	최순례	요 양 보 호 사	9		
10	유동현	요 양 보 호 사	10		
11	이경자	요 양 보 호 사			
12	안연순	요 양 보 호 사			
13	추정순	조 리 원			
14					
15					

주간종사자			야간종사자		
연번	성명	직위	연번	성명	직위
1	유성호	시 설 장	1	김연묵	요 양 보 호 사
2	박주연	사 회 복 지 사	2	이경자	요 양 보 호 사
3	윤천숙	간 호 사	3	안연순	요 양 보 호 사
4	김 유	작 업 치 료 사	4		
5	강혜복	요 양 보 호 사	5		
6	유수현	요 양 보 호 사	6		
7	최순례	요 양 보 호 사	7		
8	김종귀	요 양 보 호 사	8		
9	하정선	요 양 보 호 사	9		
10	이철영	요 양 보 호 사	10		
11	배미용	요 양 보 호 사	11		
12	이기영	요 양 보 호 사	12		
13	유동현	요 양 보 호 사	13		
14	양영순	요 양 보 호 사	14		
15	김옥분	요 양 보 호 사	15		
16	추정순	조 리 원	16		
17	홍혜숙	조 리 원	17		
18	이주용	위 생 원	18		



노 인 장 기 소 망 요 양 원

급여 이용정보

3. 종사자 현황

번호	직 종		성 명	자격증	입사일	비 고
1	시 설 장		유성호	사회복지사	2003.05.15	
2	사 회 복 지 사		박주연	사회복지사	2013.03.18	
3	간 호 사		윤천숙	간호조무사	2009.11.04	
4	작 업 치 료 사		김 유	작업치료사	2014.11.04	
5	1	요 양 보 호 사	강혜복	1급 요양보호사	2003.05.15	
6	2	요 양 보 호 사	유수현	1급 요양보호사	2010.06.25	
7	3	요 양 보 호 사	최순례	1급 요양보호사	2011.10.21	
8	4	요 양 보 호 사	하정선	1급 요양보호사	2012.12.03	
9	5	요 양 보 호 사	이철영	1급 요양보호사	2012.12.25	
10	6	요 양 보 호 사	배미용	1급 요양보호사	2012.12.25	
11	7	요 양 보 호 사	안연순	1급 요양보호사	2013.04.01	
12	8	요 양 보 호 사	김옥분	1급 요양보호사	2013.04.01	
13	9	요 양 보 호 사	이경자	1급 요양보호사	2013.05.01	
14	10	요 양 보 호 사	김연묵	1급 요양보호사	2013.12.02	
15	11	요 양 보 호 사	김종귀	1급 요양보호사	2014.05.05	
16	12	요 양 보 호 사	이기영	1급 요양보호사	2014.05.26	
17	13	요 양 보 호 사	양영순	1급 요양보호사	2014.09.03	
18	14	요 양 보 호 사	유동현	1급 요양보호사	2011.03.22	
19	1	조 리 원	추정순		2011.01.25	
20	2	조 리 원	홍혜숙		2014.09.18	
21	1	위 생 원	이주용		2015.06.19	
22	1	촉 탁 의 사	하준명	정신과 전문의	2013.08.1	



노 인 장 기 소 망 요 양 원

Ⅲ 시설현황

시 설 명	소망요양원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시 설 장	유 성 호					자 격 증			2급 사회복지사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지번			253-4			
대지면적	2,990㎡					건축물 수			1			
건축면적	898.78㎡					주용도			노유자시설			
건폐율	30.06%					총 주차대수			5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41개소	14	1	1	1	1	1	1	1	1	9	9	1
정원	현원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실	
38명	37명		-		7		2		4		1	
시설설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실, 건조장, 기계실, 보일러실, 린넨실, 창고, 저온저장고, 야외휴게실, 테라스, 파고라, 주차장, 산책로, 특별실											
보험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보험, 화재보험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253-4											
전 화	031-641-9505					FAX			031-641-9507			
홈페이지	www.somanghouse.com					E-mail			somangysh@naver.com			

급여 이용정보

IV 보험가입현황

업무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ION

발행일 : 2015-06-30

1. 피보험자 관련사항

피보험자	소망요양원	사업자번호	126-82-89278	입소정원수	38	명
보험기간	2015-06-30 24:00 ~ 2016-06-30 24:00	청약일	2015-06-30	재판관할	대한민국	
소재지	우) 467-881	경기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253-4				

2. 보험가입 관련사항

■ 업무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81492324000580	담보위험	전문직업인의 업무배상책임
소급담보일	2015-06-30	통지연장기간	60일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대인대물일괄 1 사고당 보상한도	KRW	100,000,000	
대인대물일괄 연간 총 보상한도	KRW	100,000,000	
1 사고당 공제금액	KRW	50만원	

- 업무배상책임 사용약관

1. 업무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2. 노인요양시설종사자특별약관
3.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4.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5. 정보기술추가특별약관
6. 서기 2000년부담보특별약관
7. 날짜인식오류부담보특별약관
8.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입소시설 정회원영에 관한 특례' 적용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81492326000560	담보위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업종코드	노인요양시설	가입형태	점유자	타보험가입여부	없음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시설 대인 1인당 보상한도		KRW	100,000,000		
시설 대인 1사고당 보상한도		KRW	500,000,000		
시설 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		KRW	10,000,000		
1사고당 공제금액		KRW	100,000		

- 영업배상책임 사용약관

1. 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2.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3. 테러행위보상제외
4. 정보기술추가특별약관

위 피보험자는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업무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 1가 87번지)

www.samsungfire.com

대표이사

사 장

安 敏 洙



※ 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보험종목 약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상관련문의 일반손사파트 김성준대리 (Tel. 070-7111-8689)

납입증명서

삼성화재에 연간 보험료

2,609,100 원 중

2,609,100 을 정히 납입하였습니다.

2015-06-30

시 설 명 :

소망요양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 1가 87번지)

www.samsungfire.com

대표이사

사 장

安 敏 洙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단체보험영업부 감어인보험대리점 이준희

Tel: 02-780-9181 / 010-2331-4028, FAX: 0303-3139-1599, E-mail: gameoin71@hanmail.net



노양기관 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IV 보험가입현황

보험번호	60-10078665	화재공제(일반)	청약일자	2014년 1월 7일
계약사항				
계약자	성명/법인명	유성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50407-1*****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서동대로8830번길 56 105동302호(이천 장호원 코아루 1단지)			
피공제자	성명/법인명	유성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50407-1*****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서동대로8830번길 56 105동302호(이천 장호원 코아루 1단지)			
공제기간	2014년 1월 7일 16:00부터 2017년 1월 7일 16:00까지			
통제가입금액	51,500	만원	공제료	399,600 원
통제목적물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582번길 80-90			

담보사항

부 호	공제의 목적 및 이월이 수용된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공제가입금액(만원)
1	경량철골조 판넬층(슬라브층)(조립식 포함) 단층2동 813㎡	38,500
2	일반집기비중 일체-부호1내 분산수용함	10,000
3	시설 일체-부호1내 분산수용함	3,000
질권사항	질권자명: 1 장호원신용협동조합 - 위 공제목적물에 대한 질권 사항을 승낙함. 승낙일:2014-01-07	48,500
추가약관 ※ 날짜인식 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데려행위 면책 추가약관		

인가번호: 03-110
조 합 명: 장호원

발행일자: 2014-01-09
발행사유: 신규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100원
서대전세무서
선납2013-6호

Page: 1/1

To: 0316419507

031 643 8807

2015-JUN-18 12:52 From: J



농 양 장 기 관 소 망 요 양 원